

## 팩트 시트 B

### 부상 근로자를 위한 산재 보상 용어집

**승인된 청구:**(Accepted claim) 귀하의 부상 또는 질병이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된다고 동의한 청구입니다. 청구가 승인되더라도 지연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청구(admitted claim)라고도 합니다.

**행정 이사 (AD):** (Administrative director) 산업재해보상부서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합의된 의료 평가자(AME):** (Agreed medical evaluator) 귀하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AME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료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와 보험 회사가 합의 하에 고른 의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평가자(qualified medical evaluator, QME)를 이용하게 됩니다. QME를 확인하세요.

**대체 근무:** (Alternative work) 이전 고용주와의 새로운 일자리. 의사가 귀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경우, 고용주는 추가 실업 수당이나 직업 재활 수당 대신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대체 일자리는 업무 제한을 충족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부상 당시 지급받은 임금 및 수당의 85% 이상을 지급하고, 부상 당시 거주지에서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전국적인 의사 단체입니다. AMA는 “영구장애 평가 가이드”(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합니다. 영구장애가 2005년 등급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경우, 의사는 AMA의 가이드를 사용하여 장애 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장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ADA에 따른 권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 사무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office)에 문의하세요. 귀하 지역의 EEOC 사무소에 대해서는 1-800-669-4000 또는 1-800-669-6820(TTY)으로 전화하세요.

**AOE/COE(고용 과정에서 발생 및 발발하는 부상):** 부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고 업무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항소 위원회:** (Appeals board)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검토하고 재검토하기 위해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재검토 부서(Reconsideration Unit)라고도 합니다. 산재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를 참조하세요.

**신청인:** (Applicant) 청구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 산재보상 항소 위원회(WCAB) 사무소에서 사건을 개시하는 당사자(일반적으로는 직원인 귀하)입니다..

**신청인 변호인:** (Applicants' attorney) 산재보상 소송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신청인이란 부상당한 근로자인 귀하를 의미합니다.

**청구 판정 신청서(신청서 또는 앱):**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claim)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지역 산재보상 항소 위원회(WCAB) 사무소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배분:** (Apportionment) 귀하의 영구적인 장애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직장 내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장애로 인한 것인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감사 부서:** (Audit Unit) 청구 관리자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는 DWC 내 부서입니다. 이러한 민원 사항은 회사의 클레임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택 통지서:** (Benefit notice)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리기 위해 귀하에게 보내는 필수 서신 또는 양식입니다. 통지서(notice)라고도 합니다.

**Cal/OSHA:** 주 직업 안전 보건과(DOSH) 산하 부서입니다. Cal/OSHA는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을 검사하고 법률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132a:** 산재보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귀하와 귀하의 사건에서 증언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산재 보상법입니다.

**자체 대안:** (Carve-out) 자체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와 노조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산재보상 혜택 제공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 (DWC-1):** (Claim form) 고용주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청구 조정자:** (Claims adjuster) 청구 관리자를 참조하세요.

**청구 관리자:** (Claims administrator) 산재 보상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 회사 및 기타 업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청구 관리자는 보험 회사 또는 고용주의 청구를 처리하는 타사 관리자를 위해 일합니다. 일부 보험 청구 관리자들은 자체적으로 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대형 기업에서 직접 근무합니다. 청구 심사자(claims examiner) 또는 청구 조정자(claims adjuster)라고도 합니다.

**청구 심사자:** (Claims examiner) 청구 관리자(claims administrator)를 참조하세요.

**보건 및 안전 및 산재 보상 위원회 (CHSWC):** (Commission on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캘리포니아 주 산재 보상 및 직장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감형:** (Commutation) 영구 장애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산재 보상 판사의 명령입니다.

**타협 및 해제(C&R):** (Compromise and release) 일시불을 받고 향후 의료비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의의 한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산재 보상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누적 부상(CT):** (Cumulative injury) 직장에서 반복적인 사건이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발생한 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손목을 다치거나 계속되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청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 날짜:** (Date of injury) 다치거나 아팠을 때. 부상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부상 날짜가 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반복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경우(누적 부상), 부상 날짜는 업무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보험금:** (Death benefits)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생존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준비 선언(DOR 또는 DR):** (Declaration of readiness) 분쟁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산재 보상 판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경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피고:** (Defendant) 급여 또는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귀하를 반대하는 당사자(일반적으로 귀하의 고용주 또는 보험 회사)입니다.

**지연 안내 서신:** (Delay letter)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지급 전에 필요한 정보와 지급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알려줍니다.

**청구 거부:** (Denied claim) 보험 회사가 귀하의 부상 또는 질병이 산재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결정을 귀하에게 통지한 청구입니다.

**직원의 직무에 대한 설명(DWC 양식 # AD 10133.33):** (Description of employee's job duties) 고용주와 직원이 직원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의사가 이 양식을 검토하여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Disability) 일상 생활에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신체적, 사회적, 업무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애 평가 부서(DEU):** (Disability Evaluation Unit) 의료 보고서를 기반으로 영구 장애의 비율을 계산하는 DWC 내의 단위입니다. 장애 평가자(disability rater)를 참조하세요.

**장애 관리:**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장애가 시작된 후 조기에 개입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척추 부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의 경우 회복 과정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재활 간호사가 고객님 및 담당 의사와 함께 참여하며, 치료 진행 상황은 보험 회사에 보고됩니다.

**장애 평가자:** (Disability rater) 귀하의 상태를 설명하는 의료 보고서 또는 의료 법률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귀하의 영구 장애를 평가하는 DWC 장애 평가 부서의 직원입니다.

**장애 등급:** (Disability rating) 영구 장애 등급(permanent disability rating)을 참조하세요.

**차별 청구(노동법(Labor Code)132a):** (Discrimination claim) 고용주가 산재 보상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한 경우 제기하는 청원입니다.

**분쟁:** (Dispute) 지불, 서비스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음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보상부서(DWC):**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주정부 노사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 내 부서입니다. DWC는 산재보상법을 관리하고, 산재보상 혜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며, 부상당한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산재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자 판정 관리 시스템(EAMS):** (Electronic Adjudication Management System) 산업재해보상부서 사례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입니다.

**직원:** (Employee) 업무 활동이 개인 또는 단체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이라는 용어에는 비허가 근로자 및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고용주:** (Employer) 사용자의 업무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인체공학:** (Ergonomics) 직장의 신체적 요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의 적합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장비, 도구, 작업 작업 및 작업 환경을 선택, 설계 또는 수정할 때 사람의 능력에 따른 가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수 직능:** (Essential functions) 원하는 직무 또는 직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직능. 대체 근무를 고려할 때는 해당 직무의 필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FEHA에 따른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1-800-884-1684로 문의하세요. 경우에 따라 FEHA는 연방 장애인법(ADA)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자녀 또는 기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직업 보호 휴가를 제공하는 연방법입니다. 또한 휴가 기간 동안 그룹 건강 보험 혜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1-866-4-USA-DOL로 문의하세요.

**제출:** (Filing)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 또는 정부 기관에 문서를 보내거나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제출 날짜는 문서가 접수된 날짜입니다.

**최종 명령:** (Final order) 적시에 항소하지 않은 산재보상 판사의 모든 명령, 결정 또는 판정.

**판정 결과 및 보상금(F&A):** (Findings & award) 지급금 및 향후 제공해야 하는 치료를 포함하여 귀하의 사건에 대한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의 서면 결정문입니다. F&A는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 명령이 됩니다.

**사기:** (Fraud) 산재보상 혜택을 받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는 행위.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향후 의료:** (Future medical)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

**의료 서비스 기관(HCO):** (Health care organization) 산재 보상 시스템 내에서 관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미국 노동부에서 인증한 기관입니다.

**심리:** (Hearings) 산재 보상 판사가 분쟁 또는 제안된 합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장애 등급:** (Impairment rating) 부상당한 신체 부위의 정상적인 사용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이에 대한 백분을 추정치입니다. 장애 등급은 미국의사협회(AMA)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 등급은 영구 장애 등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영구 장애 등급과는 다릅니다.

**인 프로 퍼:** (In pro per)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부상당한 근로자.

**독립 청구서 검토(IBR):** (Independent bill review) DWC가 계약한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청구 분쟁을 해결하는 비공식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이 용어에 대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 노동법 집행 기관과 법원은 누군가가 직원인지 또는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산재 보상 및 기타 급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합니다. 고용주가 귀하가 독립 계약자이며 산재 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 계약자는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독립 계약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업의 세부 사항 또는 방식을 제어함
- 귀하를 해고할 권리를 보유함
- 시간당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함
- 실업 급여 또는 사회 보장 소득을 공제함
- 재료 또는 도구를 공급함
- 특정 요일 또는 시간에 근무하게 함

**독립 의료 검토(IMR):** (Independent medical review) DWC가 계약한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치료 요청이 거부, 변경 또는 지연된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만 IMR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의료 검토 기관(IMRO):** (Independent medical review organization) 이 조직은 사건이 의료 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사건이 적격한 경우, 조직은 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정기 심사인지 신속 심사인지 여부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정보 및 지원(I&A) 담당관:** (Information & Assistance (I&A) officer) 질문에 답변하고, 부상당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 워크숍을 진행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비공식적으로 보험금 청구 문제를 돕는 DWC 직원입니다.

**정보 및 지원 부서(I&A):** (Information & Assistance Unit (I&A)) 산재 보상 청구의 모든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DWC 내 부서입니다.

**상해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고용주는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al/OSHA에서 시행합니다.

**판사:** (Judge) 산재보상 행정법 판사(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ve law judge)를 참조하세요.

**유치권:** (Lien) 산재보상 사건에 대한 권리 또는 지급 청구권입니다. 의료 제공자와 같은 유치권 청구인은 지역 산재 보상 항소위원회에 양식을 제출하여 산재 보상 사건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활성화 수수료:** (Lien activation fee)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된 유치권에 대해 유치권자가 요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DOR을 신청할 때, 유치권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2014년 1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권이 기각됩니다.

**유치권 신청 수수료:** (Lien filing fee)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모든 유치권은 의료 서비스 관련 유치권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수 합의 회의(MSC):**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재판 전에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야 하는 회의입니다.

**최대 의료 개선(MMI):** (Maximal medical improvement)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으며 향후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MI에 도달하면 의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영구 장애의 정도(있는 경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재 회의:** (Mediation conference)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I&A 담당자 앞에서 열리는 자발적 회의입니다.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의학적 치료(medical treatment)를 참조하세요.

**의료-법률 보고서:** (Medical-legal report) 의사가 작성하는 귀하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분쟁이 있는 의료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의료 마일리지:** (Medical mileage) 진료 예약, 치료, 약국 방문 및 기타 의료 관련 여행에 대해 마일리지 환급(주차 및 통행료 포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MPN):** (Medical provider network) 보험사 또는 자체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하고 DWC의 행정 책임자가 승인한 의료 제공자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의학적 치료:** (Medical treatment)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의 영향을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치료. 의학적 관리(medical care)라고도 합니다.

**의료 부서:** (Medical Unit)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MPN), 독립 의료 검토(IMR) 의사, 의료 기관(HCO), 자격 의료 평가자(QME), 패널 QME, 이용 검토(UR) 플랜, 척추 수술 세컨드 오피니언 의사를 감독하는 DWC 내 부서입니다.

**변경된 업무:** (Modified work) 이전 업무에서 일부 변경을 하여 귀하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귀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직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경우, 고용주는 추가 실업 수당 대신 대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양도 불가 바우처:** (Nontransferable voucher)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문서로, 귀하 및 보험 회사 양측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추가 실업 수당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비 지급 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통지:** (Notice) 혜택 통지(benefit notice)를 참조하세요.

**객관적 요인:** (Objective factors) 치료 의사, QME 또는 AME가 영구 장애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측정, 직접 관찰 및 검사 결과.

**일정 외(OTOC):** (Off calendar) 보류 중인 작업이 없는 WCAB 사건입니다.

**변경 또는 대체 근로 제공(DWC-AD10133.53):** (Offer of modified or alternative work) 귀하가 2004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상을 당했고, 치료 의사가 귀하에게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고용주가 추가 실업 수당 대신 변경된 업무 또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회사로부터 받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또한 고용주가 귀하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경우 영구 장애 수당을 15%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규, 변경 또는 대체 근로 제공(DWC-AD 10133.35):** (Offer of regular, modified or alternative work) 귀하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부상을 당했고, 치료 의사가 귀하에게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고용주가 추가 실업 수당 대신 상근직, 변경된 업무 또는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입니다.

**패널 자격 의료 평가자(QME):** (Panel qualified medical evaluator) DWC 의료 부서에서 발급한 3명의 독립적인 의료 평가자(QME) 명단입니다. 의사 3명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Party)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 고용주, 변호사, 기타 보험금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의사 또는 병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처벌금:** (Penalty) 귀하의 청구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아 귀하가 받는 금액입니다. 고용주 또는 보험 회사가 지불하는 처벌금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10%가 부과되며,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최대 25%(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구 및 고정(P&S):** (Permanent and stationary) 귀하의 건강 상태가 최대한 의학적으로 호전된 경우입니다. P&S가 되면 의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영구 장애의 정도(있는 경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스케줄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P&S 대신 최대 의료 개선(MMI, maximal medical improv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P&S 보고서도 참조하세요.

**영구 장애(PD):** (Permanent disability) 의학적 호전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에도 소득 능력이 감소하는 지속적인 장애입니다.

**영구 장애 선지급금(PDA):** (Permanent disability advance) 향후 지급해야 할 영구 장애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영구 장애(PD) 혜택:** (Permanent disability (PD) benefits)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나 생계 능력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영구 장애 지급금:** (Permanent disability payments) 보상금 지급 전후에 받은 영구 장애의 확실한 부분을 기준으로 격주로 지급됩니다.

**영구 장애 등급(PDR):** (Permanent disability rating)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를 추정하는 백분율입니다. 이는 귀하의 건강 상태, 부상 날짜, 부상 당시 나이, 부상 당시 직업, 직업으로 인한 장애 정도, 향후 소득 능력 감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영구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 수를 결정합니다.

**영구 장애 등급 일정(PDRS):** (Permanent disability rating schedule) 영구 장애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DWC 간행물입니다. 부상을 당한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스케줄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장애 등급을 매깁니다.

**영구 부분 장애 판정:** (Permanent partial disability award) 산재 보상 판사 또는 산재 보상 항소 위원회가 내린 영구 부분 장애에 대한 최종 판정입니다.

**영구 부분 장애(PPD) 혜택:** (Permanent partial disability (PPD) benefits)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나 생계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영구 총 장애(PTD) 혜택:** (Permanent total disability (PTD) benefits) 영구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주치의:** (Personal physicia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학박사) 또는 정골의사(정골의학박사)로서 과거에 귀하를 치료한 적이 있고 귀하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재검토 청원(재검토):**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Recon)) 산재 보상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 기관인 산재 보상 항소 위원회 재심의 부서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의사:**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 정골의사, 심리학자, 침구사, 검안사, 치과 의사, 족부 전문의 또는 카이로프랙틱 의사. 주치의(personal physician)의 정의는 좀 더 제한적입니다. 주치의를 참조하세요.

**영구 및 고정 상태 및 업무 능력에 대한 의사의 보고서(DWC form #AD 10133.36):** (Physician's report of permanent and stationary status and work capacity) 의사가 고용주에게 잠재적인 정규 업무, 변경된 업무 또는 대체 업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인한 업무 능력 및 활동 제한에 대해 충분히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사전 지정 의사:** (Pre-designated physician)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사전 지정(pre-designation)을 참조하세요.

**사전 지정:** (Pre-designation) 고용주에게 주치의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의사가 과거에 귀하를 치료한 적이 있고 귀하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부상 전에 의사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치료하기로 동의했고, 부상 전에 고용주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 주치의(M.D.) 또는 정골의학 전문의(D.O.)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개인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과
- (2) 개인 주치의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세요.



**1차 치료 의사(PTP):** (Primary treating physician)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의사. 이 의사는 귀하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치료의(treating physician) 또는 치료 의사(treating doctor)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증명:** (Proof of service) 문서가 특정 당사자에게 전송되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P&S 보고서:** (P&S report) 치료 중인 의사가 귀하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작성한 의료 보고서입니다. 영구도 및 고정도(permanent and stationary)를 참조하세요.

**공인 의료 평가자(QME):** (Qualified medical evaluator) 의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DWC 의료 부서에서 인증한 독립적인 의사입니다.

**등급:** (rating) 영구 장애 등급(permanent disability rating)을 참조하세요.

**재검토:** (Reconsideration) 재검토 청원(petition for reconsideration)을 참조하세요.

**요약 등급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a summary rating) 변호사가 없고 영구 장애 등급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재심 부서: (Reconsideration Unit)** 항소 위원회(appeals board)를 참조하세요.

**상근직:** (Regular work) 부상 당시와 동일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부상 당시 거주지에서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 위치한 이전 직장.

**승인 요청(RFA):** (Request for authorization) 치료 의사가 청구 관리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제한:** (Restrictions) 업무 제한(work restrictions)을 참조하세요.

**직장 복귀 프로그램:** (Return to work program) 부상으로 인해 영구 장애(PD)가 발생하고 주정부에서 소득 손실에 비해 PD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사관계부의 직장 복귀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 장애 등급 평가 일정: (Schedule for rating permanent disabilities)** 영구 장애 등급 평가 일정(permanent disability rating schedule)을 참조하세요.

**심각하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S&W):**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고용주의 심각하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제기하는 청원입니다.

**합의:** (Settlement) 산재 보상금 및 향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귀하와 보험 회사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산재 보상 판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 보장 장애 수당:**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완전 장애인을 위한 장기 재정 지원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합니다. 받는 산재 보상금에서 감액됩니다.

**직장 복귀 보조 프로그램(RTWSP): (Return to Work Supplemental Program)** 직장 복귀 프로그램(return to work program)을 참조하세요.

**특정 부상:** (Specific injury) 직장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부상. 예: 넘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피부에 화학 물질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등입니다.

**주 평균 주급:** (State average weekly wage) 미국 노동부에서 보고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업 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전년도에 지급된 주당 평균 임금입니다. 2006년부터 일시적 장애 수당 인상은 이 지수에 연동됩니다.

**주 장애 보험(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부(EDD)에서 캘리포니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 임금 대체 보험 플랜입니다. SDI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의학적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임금 손실을 입은 적격 근로자에게 단기 급여를 제공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경우 SD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DI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1-800-480-3287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규정된 등급:** (Stipulated rating) 영구 장애 등급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 산재 보상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 규정:** (Stipulation with award) 당사자가 판정 조건에 동의하는 사건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서는 심사위원이 최종 수상자로 결정하기 위해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상금 요청 규정(Stips):**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당사자가 보상금 지급 조건에 합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여기에는 향후 의학적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서는 최종 검토를 위해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주관적 요인:** (Subjective factors) 부상당한 근로자가 설명하고, 의사가 근로자에게 영구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고한 통증 및 기타 증상의 정도입니다. 2005년 평가 일정은 주로 객관적인 측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환장:** (Subpoena) 증인에게 심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문서 지참 증언 소환 명장 (SDT):** (Subpoena Duces Tecum) 요청자에게 기록을 보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요약 등급:** (Summary rating) DWC 장애 평가 부서에서 계산한 영구 장애의 비율입니다.

**요약 등급 재검토:** (Summary rating reconsideration) DWC 장애 평가 부서에서 발급한 요약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실업 수당(SJDB):** (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산재 보상 혜택입니다. 2004년 이후에 부상을 입었고, 이전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영구적인 부분 장애가 있으며, 고용주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주에서 승인하거나 공인된 학교에서 교육 재교육 또는 기술 향상 비용을 배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배우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적격 교육 제공자 목록에 등재된 기타 교육 제공자의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인증, 테스트 비용, 교육 과정을 위한 도구 구매, 최대 1,000달러의 컴퓨터 장비 구매 또는 최대 500달러의 기타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10%, 즉 600달러까지 공인 직업 소개소 또는 직업 상담사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장애(TD 또는 TTD):** (Temporary disability) 부상으로 인해 회복하는 동안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임금을 잃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 부분 장애(TPD) 혜택:** (Temporary partial disability (TPD) benefits) 회복하는 동안 일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 전체 장애(TTD) 혜택:** (Temporary total disability (TTD) benefits) 회복하는 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교통비:** (Transportation expenses) 의료 마일리지를 참조하세요.

**치료 의사:** (Treating doctor) 1차 치료 의사(primary treating physician)를 참조하세요.

**치료의:** (Treating physician) 1차 치료 의사를 참조하세요.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UEBTF):** (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DWC에서 운영합니다.

**사용 검토(UR):** (Utilization review) 보험 회사에서 담당 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추천한 치료를 승인하고 비용 지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직업 및 직장 복귀 상담사(VRTWC):** (Vocational & return to work counselor) 귀하에게 영구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 복귀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고객을 평가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VRTWC는 모든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과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바우처:** (Voucher) 추가 실업 수당(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및 양도 불가 바우처(nontransferable voucher)를 참조하세요.

**임금 손실(일시적 부분 장애):** (Wage loss (temporary partial disability)) 일시적 부분 장애 혜택을 참조하세요.

**전인 장애(WPI):** (Whole person impairment)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의 경우 영구 잔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례는 영구 장애 등급(PDR)의 일부로 영구 장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WPI 계수 1.4가 증가합니다.

**업무 제한:** (Work restrictions)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의사의 설명입니다. 업무 제한은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 보상 행정법 판사:** (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ve law judge) 산재 보상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합의를 승인하는 DWC 직원입니다. 판사는 지역 DWC 지역 사무소에서 심리를 개최하며, 판사의 결정은 WCAB의 재검토 부서에서 검토 및 재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판사라고도 합니다.

**산재보상 항소 위원회(WCAB):**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 기관으로, 지역 산재 보상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합니다.

**산재 보험 평가국(WCIRB):**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주 보험부의 대리 기관이며 보험 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이 민간 기관은 산재 보험 및 고용주 책임 보험에 대한 통계 및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순수 보험료를 개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로 작성합니다.

**산재 보상 판사:** (Workers' compensation judge) 산재 보상 행정법 판사(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ve law judge)를 참조하세요.

*이 팩트 시트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변경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여기에 제시된 것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15 Clay Street, 17th Floor  
Oakland, CA 94612

2024년 4월

12

DWC의 사명: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산재 보상 혜택에 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청구 관리를 모니터링합니다.

귀하와 가까운 곳의 정보 & 지원 부서를 찾고 싶으시다면 1-800-736-740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dwc.ca.gov](http://www.dwc.ca.gov)에 접속하세요.